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78

발의연월일: 2022. 9. 1.

발 의 자: 조은희·김선교·김홍걸

박대수 • 박정하 • 배준영

서일준 • 유상범 • 이명수

지성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마찬가지로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특히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가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

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6제4항).

법률 제 호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6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인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	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
차 정보제공 등) ① ~ ③ (생	차 정보제공 등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	4
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	
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	
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
	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
	<u>없다.</u>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